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0조의 요약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결정된 내용을 통지함.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내국법인의 경우는 결정·경정내용을 공시송달함.

●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2010. 12. 30 개정)

I. 본 조의 개요

본 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본 법 제53조의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조약체결 상대방 국가와의 합의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와 본 법 제66조의 결정과 경정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 및 통지하고 이밖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결정 · 경정통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방법 관련규정

① 과세표준 · 세액산출 근거기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납세고지서의 부속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란을 기재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대신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부결정이나 경정의 공지 · 통지 · 고지 및 공시 방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액의 기재

상기 시행령 제2항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 대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라도, 그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방법

1) 납세고지서 고지·과세표준통지서 발부

국세징수법 제9조는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고지서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정이나 경정 결과 징수할 세액이 없다면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더라도 결정이나 경정내용은 통지되어야 하는데 과세표준과 세액통지서로서 발부되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4. 4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2008. 4. 29 단서신설)

2) 결정·경정 통지권자(관할세무서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 등

① 불분명시 공시송달 통지

외국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결정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 및 본점 주소

내국법인의 모든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실질상 혹은 등기상)가 진다. 반면에 외국법인은 지점장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라는 법적개념은 아니므로 납세업무의 책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 신고시 관리책임자나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가 국내사업·국내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시행령은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외국법인은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기본법상의 서류송달규정을 참고로 제기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10. 1. 1 개정)
-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Ⅲ. 과세표준·세액통지의 강행규정성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재

본 조는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개념에 의거 처분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유도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 불복여부 결정 및 그 불복신청상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이 있다.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계산내역을 알아야 승복할지 불복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본 조의 과세표준과 세액통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② 통지의 하자 및 재발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나 국세환급금충당명세서 등을 송달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납세고지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가 기재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고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에 납세고지서를 재작성하여 송달하여도 당초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이밖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도 치유될 수 없다.

소송중인 상태에서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한 처분은 중복과세이므로 위법한 처분인데 당초 결정된 부과처분취소를 확정하고 재부과처분함이 타당하다.